

# 제1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11. 30(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 연, 김장언, 윤재은, 윤태건, 이낙경, 이성옥  
이웅배, 이해경, 정정주, 조유진, 호해란, 심동섭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3건 4작품(조각 4)  
[신규 4작품]
- ◆ 결 과 : 승인 2작품, 재심 2작품

## 위원 발언 내용

### <위원장>

- 2015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. <채점 방법 거수>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토론 후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작품 4점을 먼저 보시고 서울시에서 설명을 해주실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해당사항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.

- 1번 작품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여 상암동에 짓고 있는 건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입니다. 공모로 선정된 2작

품 중 1작품만 먼저 들어왔습니다.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이고 대림이 시공사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입니다. 9월중에 2개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선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공사인 대림측에서 1차 심사한 위원 분들과 두 분이 더 추가되어 재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이번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단계입니다.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표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, 위원 분들에게서는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시어 우리시 심의위원회에서 감정·평가하는 항목인 가격의 적정성, 예술성,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, 접근성, 유지보존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.

- 정리하자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물을 짓는데 시행사는 대림입니다. 대림이 공모를 내서 여러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.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절차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.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준비된 언론보도내용이나 작가 소명서, 의견서 등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. 내용을 먼저 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부결이 될 경우 재공모가 되는건가요?
- 유선상 대림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재심이 될 경우 한번은 당선 작가에게 기회를 더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
- 만약 부결이 된다면 재공고를 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- 당초 공모지침에는 1등 작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공고보다는 2등 당선작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.
-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.

- 우리는 신청된 작품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의 문제는 시공사인 대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- 작가의 소명서나 원작자의 의견서 등을 봤을 때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해서 넘어갔을 경우에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후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?
- 작품을 보완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. 준공예정일도 2월말이어서 시공사의 입장에서 재공고에 대한 시간의 여유가 없을 듯 합니다.
- 준공을 빌미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준공문제는 사실상 예치금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- 법이 바뀌면서 예치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. 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출연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.
- 보통 보완이라고 하면 안전의 문제, 환경적인 문제 등을 보완을 하는 건데 이 작품의 경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, 무엇을 보완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
- 위원분들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점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심의참고자료를 보시면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사진이 2개 나와 있는데 왼쪽 작품이 부인의 당선작, 오른쪽 작품이 남편 당선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나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.
- 지금이 11월말인데 보완을 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

다. 언제 보완을 하며 언제 위원회에 재상정이 될 거며 설치를 하는 건지.. 이걸 이미 작품이 완성되어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될 거 같습니다.

- 이 작가의 작품을 부인이 똑같이 했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미술작품심의회에서 작품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.
- 물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. 우린 우리대로 점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토론을 하면서 점수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작가는 소명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소명을 한 건지 예술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-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작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업체가 비대해지니까 나눠서 두 사람 몫으로 하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.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.
-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.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.
- 저희가 감정적으로 할 수만 없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점수로 말씀해주시죠
- 이 작품이 공모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
-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 동안은 공모작에 가산을 주어왔습니다. 작가 소명서나 원작자 의견서를 보면 원작자인 남편이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였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되어있어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본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

- 심의 의결서에 추후 보완한다는 것 자체를 금하는게 어떤가요?
- 이 작품을 보완해서 올리는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자는 말씀입니다.
- 이 작품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.
- 권고사항으로는 가능할거 같은데요. 물론 이 자리가 통과와 불통과 두 가지만 결정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.
- 재공고를 하거나 2위 당선자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걸 단서조항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.
- 또 하나 원작자인 남편이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위원이라는 겁니다.
- 이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.
- 혹시 서울시 조례상에 이런 문제에 연류되어 있는 위원을 해촉하는 조항이 있나요?
-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.
- 그렇다면 조례개정사항입니다. 나중에 의견을 내주시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죠.
- 만약 공동이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? 작품이 공동명의라면 통과가 되는 건가요?
- 오히려 공동명의라면 작품의 가치가 인정이 되었겠지만 문제는 두가지 공모에서 서로 다른 작품으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.
- 공동명의로 들어온다해도 심사기준에 독창성부분에서는 유사작품이 들어온거기 때문에 심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여기 오신 분들은 건축 조각 등의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텐

데요.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당선자의 남편이 조형물 관련업체 대표인데요. 문제가 많은 작품에 대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은 우리도 할 수 있고, 해야 한다고 봅니다. 누가보아도 같은 작품인데, 표절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이 작품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.

-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저는 절차의 문제를 얘기할까 합니다. 이의제기를 해서 2차 심의를 했는데 지금나오는 내용을 당시에 논의를 해서 2번의 심의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의 우려는 없을까요?
-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점수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점수화하는 겁니다.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- 우리가 논의하는게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소송감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. 이 회의가 소송이 가능한가요?
- 이 심의의 역할이 논의를 통해 작품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소송은 그 분들이 판단하에 할 수는 있겠죠. 예술성, 독창성 등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. 작가도 유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독창성을 떨어진다고 보아서 그런 부분을 점수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
- 공모당선작과 각 심의에서 통과되는 작품은 별개입니다. 주택공사의 당선작도 떨어집니다. 소송의 해당사항이 안됩니다. 공모로 올라온 작품을 우리가 다 심의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재심할 때 같은 의원들이 들어왔는데요.
- 1차, 2차 심의위원명단과 회의기록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. 자료

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네.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상식적으로 심의를 하고, 그 결과에 문제제기가 되어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하는 멤버가 이전과 똑같다고 한다면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문제가 있습니다.
- 처음 심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위원명단을 드렸습니다. 1차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심의를 주관하였고 2차는 시공사인 대림에서 주관을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.
-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.
- 근본적으로 공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공모가 만들어진게 작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작가가 아무도 응시를 할 수 없게 공모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.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.
- 그 내용까지 논의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거 같습니다.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내주신거 같으니 의견을 참고하셔서 채점을 해주시고, 2번 작품과 3-1, 3-2작품은 함께 각자 검토 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작품을 봐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
- 정식 활동하는 작가는 맞나요?
- 자료를 보여주시죠. (위원장 작가 경력서 검토) 정식 활동하는 작가가 맞습니다.

- 이런 작품들이 설치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?
-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.
- 그렇다면 좀 더 냉정하게 봐야하지 않나요?
- 건축주가 작품을 바꾸고 싶으면 작품변경심의를 거쳐 바꿀 수  
는 있습니다.
- 그러면 채점을 하도록 하죠. 채점을 각자 하시는데 채점 평균이  
70이상은 승인이고 미만은 재심인데 첫 번째 작품은 공모작이  
기 때문에 10점 가점이 됩니다. 총점이 가산점 10점이 부여가  
됩니다.
- 네 다들 설명을 잘 들으셨으니 채점을 해주시죠.
- 3-1과 3-2는 동일 작가인가요?
- 네. 같은 작가입니다.
- 2번 작품 ST 두께가 2T로 되어 있는데 이 봉은 적어도 3T로  
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만약 승인이 된다면 조건부로 기재하였  
으면 합니다.

### <채점 진행>

### 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#### <위원장>

- 오늘은 4개 작품 중 1번과 2번 작품이 탈락되고 3-1, 3-2번 작품은  
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 
2015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  
습니다.